

提案說明을 하겠습니다. 이 條例는 地方自治法 第32條第1項의 地方議會議員은 명예직으로 하되 日費와 旅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日費는 會期中에 한하여 旅費는 地方議會의 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命에 의하여 복무로 여행할 때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同條 第2項에는 第1項의 日費와 旅費의 지급 기준인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同法 施行令 第5條第2項에 地方議會議員에게 지급하는 日費의 지급기준은 [별표4]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5] 또는 [별표6]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財政能力을 감안하여 條例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議員報酬등에 관하여 法 및 施行令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條例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條例 制定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서울特別市議會 議員報酬등에 관한 條例案 動議의 件이 滿場一致로 議決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寅東 다음은 韓正午議政係長이 이 件에 대하여 檢討한 바를 報告하겠습니다.

○議政係長 韓正午 서울特別市議員報酬에 관한 條例 動議案에 대하여 檢討한 바 意見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條例는 提案하신 委員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地方自治法 第32條 同法施行令 第5條第2項에 의하여 制定된 條例입니다. 議員의 日費는 法律에 5萬원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한선은 條例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法律이 위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檢討한 바 여러 가지 여건상 法이 허용하는 5萬원 선이 條例案이 되어 있는 것은 法律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에 旅費 지급기준 [별표1] [별표2]에 정하는 범위내에서 旅費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1] [별표2]에 있는 旅費는 地方自治法 施行令이 정하는 旅費水準하고 같습니다.

다만 旅費水準의 가장 높은 상한선을 우리 條例는 受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法律의 범위내에서 旅費額數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法에 背馳되는 事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條例의 制定은 地方自治法 第32條 同法施行令 第5條 規定에 法의 受任을 받아 制定되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檢討報告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寅東 이상으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들었습니다.

이 案件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 議會議員報酬등에 관한 條例案 動議의 件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다시 한 번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照)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안)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골자

-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는 경우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 지급
- 의원의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5만원 지급
- 의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 여비지급
- 의원의 여비는 국내의 경우 “별표1”, 국외인 경우 “별표2”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2조
- 지방자치법령 제15조

제정(안) : 별 첨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 (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비)① 의원이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3조(출석일수의 계산)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상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이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일수로 본다.

제4조(여비)의원이 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일비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으로 한다.

제6조(여비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관내 출장 여비) 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1]의 현지교통비 전액을 지급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일비지급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비용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제6조 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인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식탁료 (1야당)
의장 부의장	1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정액	특지 4,500 감지 4,500 을지 4,000	특지 16,000 감지 15,000 을지 13,500	특지 10,500 감지 10,000 을지 9,000	800
의원	1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정액	특지 4,500 감지 4,500 을지 4,000	특지 16,000 감지 15,000 을지 13,500	특지 10,500 감지 10,000 을지 9,000	800

비고 : 1. “특지”는 서울특별시, 적할시, 과천시, 경주시 및 제주시로 “감지”는 도청소재지,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의정부시, 안산시, 구리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충주시, 이리시, 군산시, 목포시, 여주시, 나주시, 구미시, 포항시, 영천시, 마산시, 울산시,

진주시, 서귀포시로, “을지”는 기타지역으로 한다.
2.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 허용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3

등급은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

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등급에 해당 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제6조 제2항 관련)

(단위 : 미불화)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식비		
					(1일당)	(1야당)	(1야당)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의장부의장	2등급 이상의 등급이 있는 경우 또는 최고등급의 등급이 없는 경우	2등급 이상의 등급이 있는 경우 또는 최고등급의 등급이 없는 경우	1 등정액	실비액	가등급 30	가등급 133	가등급 58	150	180	210
					나등급 30	나등급 106	나등급 50			
의원	2등급 이상의 등급이 있는 경우 또는 최고등급의 등급이 없는 경우	2등급 이상의 등급이 있는 경우 또는 최고등급의 등급이 없는 경우	1 등정액	실비액	가등급 25	가등급 100	가등급 53	140	170	195
					나등급 25	나등급 79	나등급 46			
					라등급 30	라등급 80	라등급 43			
					라등급 30	라등급 53	라등급 36			
					가등급 25	가등급 100	가등급 53			
					나등급 25	나등급 79	나등급 46			
					나등급 25	나등급 60	나등급 40			
					라등급 25	라등급 40	라등급 33			

비 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뉴욕, 런던, 파리, 스톡홀름, 동경, 홍콩

나. 나등급 :

(1) 아세아주·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니아

(2) 남·북아메리카주 :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트리니다드토바고, 자메이카

(3) 유럽 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델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4) 중동·아프리카주 :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다. 다등급 :

(1) 아세아주·대양주 : 인도, 터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중화민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2) 남·북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수리남

(3) 유럽 주 : 덴마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히랍

(4) 중동·아프리카주 :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나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셔스

라. 라등급 :

(1) 아세아주·대양주 : 인도네시아, 버마, 스리랑카, 튀지, 네팔

(2) 남·북아메리카주 : 구아테말라, 엘살바

도로,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쿠와도르, 페루, 블리비아, 우루구아이, 파라과아이, 아르헨티나

- (3) 유 럽 주 : 해당국가 없음
- (4) 중동·아프리카주 : 레바논, 북예멘, 모로코, 튀니지, 루안다, 말라위, 스와지랜드, 가나, 소말리아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서울特別市議會에出席하여答辯할수있는關係公務員등의範圍에관한條例案動議의件

(10時 54分)

○委員長 金寅東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議會에 出席하여 答辯할 수 있는 關係公務員등의 범위에 관한 條例案 動議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먼저 發議者를 代表해서 廉東秀委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廉東秀委員 안녕하세요? 民主自由黨 소속 廉東秀委員입니다.

서울特別市議會에 出席하여 答辯할 수 있는 關係公務員등의 範圍에 관한 條例案 動議의 件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條例는 地方自治法 第37條第1項에 地方自治團體長 또는 關係公務員은 地方議會나 그 委員會에 出席하여 行政事務의 處理狀況을 報告하거나 意見を 陳述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同條 第2項에는 地方自治團體長 또는 關係公務員은 地方議會나 그 委員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出席答辯하

여야 한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長은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出席 答辯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同條 第3項에는 第1項 또는 第2項에 의하여 地方議會 또는 그 委員會에 出席하여 答辯할 수 있는 關係公務員은 條例에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市議會에 出席하여 答辯할 수 있는 關係公務員등의 範圍에 관한 事項을 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條例에서 정하도록 委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出席答辯 公務員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市議會 運營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條例 制定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서울特別市議會에 出席하여 答辯할 수 있는 關係公務員등의 範圍에 관한 條例案 動議의 件을 滿場一致로 議決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寅東 提案說明,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韓正午議政係長이 이 件에 대해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議政係長 韓正午 서울特別市議會에 出席하여 答辯할 수 있는 關係公務員등의 範圍에 관한 條例案에 대하여 檢討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條例는 地方自治法 第37條 規定에 의해서 規定의 受任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條例입니다.

地方自治法에 의하면 自治團體長은 議會에 出席해서 答辯할 수 있도록 하는 義務條項이 있습니다. 그리고 市長이 지정하는 關係公務員이 또한 議會에 나와서 答辯할 수 있는, 答辯할 수 있도록 하는 義務條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條例는 自治團體長인 市長말고 그 산하에 있는 보조기관의 關係公務員의 範圍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檢討했었습니다. 內務部 規定 內務部 條例 準則에 의하면 4級으로 되어 있습니다